32 (제269회-복지건설위제9차부록)
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373

제출연월일: 2024. 12. 2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근거규정 없이 명시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 따라 재해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해보상청구서(별지 제9호서식) 내 인감증명서 문구 삭제

3. 개정조례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

나.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 없음

- 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3659호, 2024. 10. 11.)
- 라. 입법예고: 2024. 10. 7. ~ 10. 28.(21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"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인감증명서, 입금계좌확인정보"를 "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입금계좌확인정 보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역자율방재단 역할) ① (생	제2조(지역자율방재단 역할) (현행
략)	제1항과 같음)

[별지 제9호서식]

【현 행】

	재해보상 청구서
담당공무원	요양·장해보상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입금계좌확인정보
확인사항	장제·유족보상: <u>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인감증명서, 입금계좌확인정보</u>

【개정안】

	재해보상 청구서
담당공무원	요양·장해보상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입금계좌확인정보
확인사항	장제·유족보상: <u>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입금계좌확인정보</u>

근거법규

□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0. 24.>
-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□「전자정부법」

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·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,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행정정보를 수집·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(이하"행정정보보유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「은행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있다. <개정 2010. 5. 17.>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·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,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·가공·이용·제공·보존 ·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○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○ 소 속: 안전총괄과

○ 직 급: 지방공업서기

○ 이 름: 최도윤

○ 연락처: (052)290-4064